



2024년 개인(클럽) 학생 선수 연간 활동 계획서 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인 학생 선수(체육단체(클럽)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의 균형적 발달을 유도하고,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될 경우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제한되니 최저 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 기초학력 신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클럽) 학생 선수**에 해당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아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방침

- 가.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 나.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다. 적용 대상 : 개인(클럽) 학생 선수

2. 추진 방향

본교에서는 개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니 필히 구체적인 대회출전계획, 훈련 참가에 따른 안전 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및 관련사항

- * 제출서류: ① 선수등록확인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개인학생선수 연간활동 계획서
- * 제출기한: **2024년 03월 12일(화)까지**
- * 제출장소: **체육 교과전담 교사 (문의 ☎ 031-636-5045)**
- * 개인학생선수 활동 보고서: **대회 출전 후 일주일 이내**
- * e-school 이수증: **학(기)년말에 출력 후 제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학생선수 연간활동 계획서 및 활동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

4. 출석 인정 처리 절차

연간활동 계획서 제출(학부모→학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생, 학부모 안내 ⇨ 수업결손 책임지도(학부모) ⇨ 운영결과 평가(출석인정결석에 반영)

5.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20일**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일로 간주
-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첨부 파일 확인 후 제출해 주세요.

2023년 3월 6일

이 천 가 산 초 등 학 교 장